

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가 시행됩니다



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(MCAA*) 제도란?

*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

OECD 가입국(한국 포함) 등이 역외탈세 방지 및 자발적 납세의무 증진을 목적으로 **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**하는 제도입니다.



이렇게 달라집니다.

- ✓ 해외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시행됩니다.
 - 신규계좌 : 가입시점에 해외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
 - 기존계좌 : 은행이 보유한 고객정보 확인 또는 본인확인서 수취 등으로 해외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✓ 해외 납세의무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 국가(세무당국)로 금융정보가 통보됩니다.
 - 생년월일, 납세자번호, 계좌번호, 계좌잔액, 이자총액 등 조세관련 금융정보가 통보됩니다.
- ✓ 다만, 미국 납세의무자로 확인될 경우, 기존 FATCA제도에 따라 미국 국세청으로 금융정보가 통보됩니다.



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이 요청하는 본인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